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2021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및 금액 인상

- **초등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6,000원에서 **28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95,000원에서 **37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422,200원에서 **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대상	지급항목	2020	2021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206,000원	286,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295,000원	376,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22,200원	448,000원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
※ 2020년 지원 금액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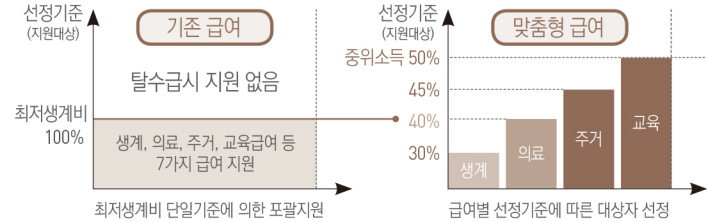
문 의 처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Q&A

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로써,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 타 급여 대비하여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장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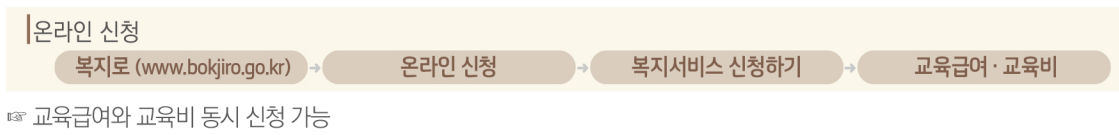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를 최초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입학 이후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21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eclick.moe.go.kr)
☞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

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다만,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or 국민기초생활보장
☞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음

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시 문자메세지)으로 통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 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 의 처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 (화) ~ 3월 19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 내용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